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여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21일,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 9. 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 9.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 9.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한병도)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

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옥 순)

□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 추가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 중 법률구조서비스에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생 략)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1. ~ 4. (현행과 같음) 5.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소송대리, 유전자검사비용지원 등---------- 6. (현행과 같음)

현행 출생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동 법 제46조제2항[1]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44조제4항[2]에서 출생신고서에 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②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3], ③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법 제44조의2제1항[4]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3)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으로부터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따른 **대체 서면(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을 준비**해야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①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현행 출생신고와 한부모가족 지원 >

구분	혼인 중	혼인 외	예외
신고 의무자	부 또는 모	모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첨부서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2)]	-	• 유전자 검사 및 출생신고 지원	-

주1)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출생신고 지원 내용임.

그런데 10대 청소년 미혼모 등의 경우 병원 내에서 진료 및 출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임신 진단 및 검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나홀로 출산 등으로 조력자도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거쳐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5)],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등을 통한 친자확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6)]

또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7)]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어 저

5) 2016년 5월 이전 인우보증제도가 있던 상황에서는 미혼모의 경우 성인 보증인 2명을 세워 출생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인우보증제도의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생신고 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고, 현행과 같이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자 또는 부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이러한 출생신고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출생신고 등을 위한 비용 및 법률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함.

현재 여성가족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나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미혼모에 대하여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8]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이에 개정안은 미등록 아동의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미혼부와 미혼모의 자녀 출생신고와 관련한 지원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미등록 아동 보호와 출생신고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유전자검사는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법률구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호를 신설하여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8) 출생확인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 유전자검사 자료가 필요함. 현재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나 미혼모에게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출생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혼모 등의 정보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도 법률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대상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와 관련한 상담, 법원 제출용 유전자검사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어 법 개정 실익은 높지 않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한병도의원, 조은희의원 및 전진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